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96호 2025. 3. 6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5-387호)
-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5-404호)
-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5-409호)
- 「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조례 및 규칙안 (예천군 공고 제2025-416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 군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] 결정[변경][안] 공람공고

호명읍 금능리 일원 경북도청이전신도시(1단계) 내 업무용지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3월 6일

예 천 군 수

1. 공람기간 : 2025. 3. 6. ~ 2025. 3. 20. (14일간)
2. 공람장소 : 예천군청 도시과
3. 공람내용 :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경북도청이전신도시 1단계) 결정(변경)(안)
4. 관련도면 및 조서 : 붙임참고
※ 붙임 결정도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)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5. 의견제출 :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6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(☎054-650-63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예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- 변경없음
 2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(변경) - 변경없음
 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 - 변경없음
 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 - 업무시설용지 외 변경 없음
- 가. 업무시설용지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	획지		비고
				위치	면적(㎡)	
계		기정	319,032.4	68필지	319,032.4	
		변경	319,032.4	69필지	319,032.4	
업1	-	113,042.8		1	87,705.9	-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. 단, 업1은 필요시 3회,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-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
				2	25,336.9	
업2	-	기정	28,855.6	1	28,855.6	
		변경	28,855.6	1	10,000.0	
				2	18,855.6	
업3	-	4,431.4		1	2,230.6	
				2	2,200.8	
업4	-	5,742.5		1	2,352.5	
				2	3,390.0	
업5	-	24,560.4		1	11,692.0	
				2	6,810.6	
				3	2,878.4	
				4	3,179.4	
업6	-	5,252.3		1	2,651.7	
				2	2,600.6	
업7	-	13,188.0		1	3,037.9	
				2	3,069.5	
				3	4,294.4	
				4	2,786.2	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업8	-	10,876.1	1	4,158.2	-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-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
			2	4,048.7	
			3	1,337.1	
			4	1,332.1	
업9	-	9,978.3	1	4,005.8	
			2	3,748.9	
			3	1,099.7	
			4	1,123.9	
업10	-	5,780.7	1	1,175.3	
			2	1,108.3	
			3	3,497.1	
업11	-	5,929.8	1	1,152.9	
			2	1,126.7	
			3	3,650.2	
업12	-	6,543.9	1	2,163.2	
			2	2,202.8	
			3	2,177.9	
업13	-	12,494.7	1	12,494.7	
업14	-	13,465.0	1	6,727.5	
			2	6,737.5	
업15	-	12,418.2	1	2,274.5	
			2	2,000.2	
			3	3,518.9	
			4	2,332.3	
			5	2,292.3	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업16	-	12,599.1	1	3,285.2	-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-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
			2	4,611.7	
			3	2,369.9	
			4	2,332.3	
업17	-	3,182.5	1	784.6	
			2	792.9	
			3	793.4	
			4	811.6	
업18	-	3,180.5	1	815.2	
			2	793.7	
			3	792.6	
			4	779.0	
업19	-	6,025.1	1	2,948.3	
			2	1,542.5	
			3	1,534.3	
업20	-	7,698.2	1	2,706.2	
			2	2,385.8	
			3	1,285.0	
			4	1,321.2	
업21	-	2,712.8	1	2,712.8	
업22	-	2,589.2	1	1,286.8	
			2	1,302.4	
업23	-	5,435.6	1	2,724.8	
			2	2,710.8	
업24	-	3,049.7	1	1,513.7	
			2	1,536.0	

5.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- 업무시설용지 외 변경 없음

가. 일반업무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일반업무 시설 (준주거 지역)	(기정) 업3, 업4-1, 업6~12, 업14, 업15-4~5, 업16~24 (변경) 업2-2, 업3, 업4-1, 업6~12, 업14, 업15-4~5, 업16~24	허용	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, 라목, 바목, 아목,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(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(마권관련시설, 경마장, 자동차 경기장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(시·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. 단, 도매시장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(촬영소 제외)	
		불허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• 「학교보건법」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	
		권장	• 업무시설	
		해당블록	• 업3, 업4-1, 업6~12, 업14, 업15-4~5, 업16~24	• (신규) 업2-2
		건폐율	• 70% 이하	• 70% 이하
		용적률	• 400% 이하	• 400% 이하
		높 이	• 최저층수 2층 이상, 최고층수 10층 이하 - (최고높이 : 45m 이하)	• 최저층수 2층 이상, 최고층수 10층 이하 - (최고높이 : 45m 이하)
		기 타	•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%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	• -

나. 공공업무시설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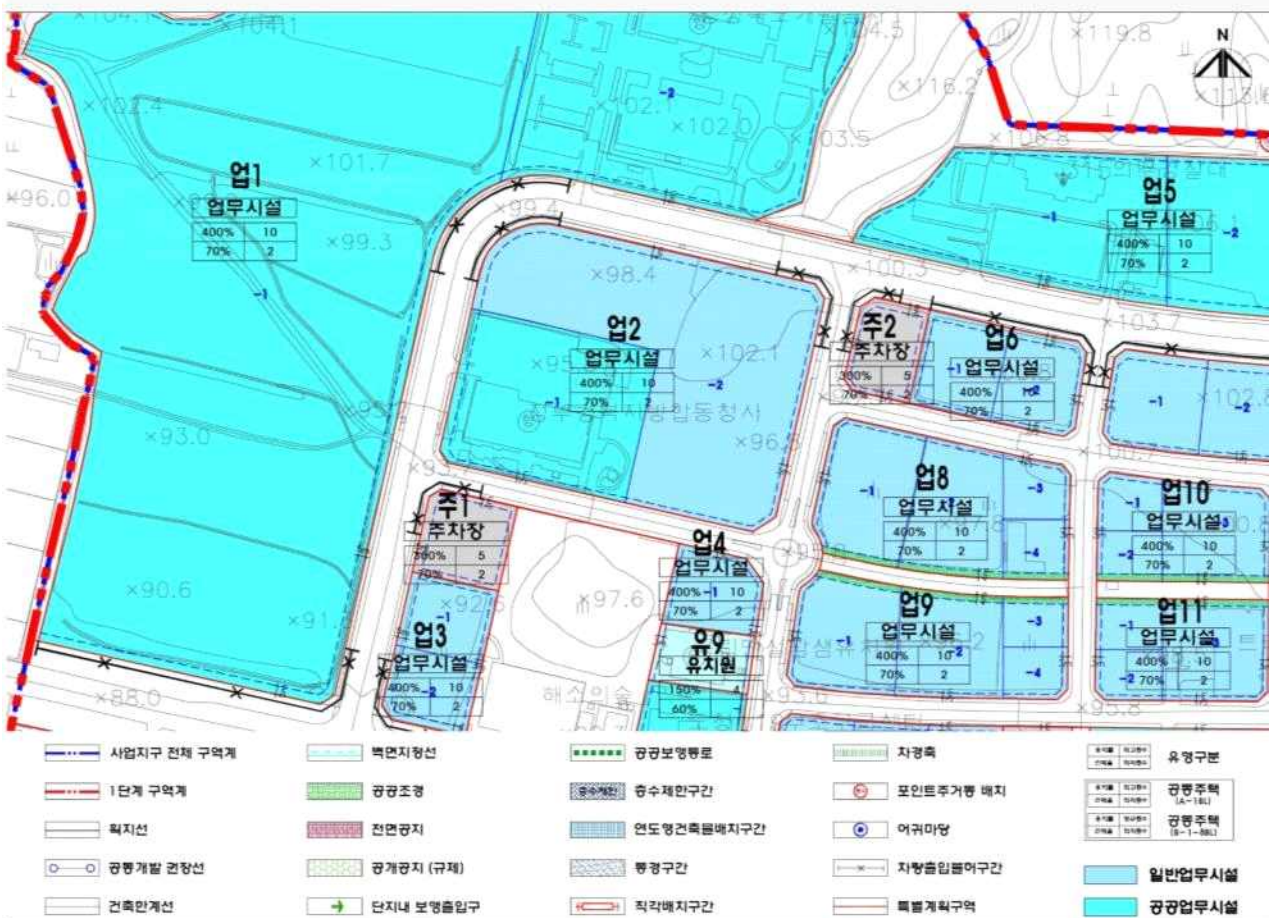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공공업무 시설 (준주거 지역)	(기정) 업1~2, 업4-2, 업5, 업13, 업15-1~3 (변경) 업1, 업2-1, 업4-2, 업5, 업13, 업15-1~3	용 도	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(시·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. 단, 도매시장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내지 마목, 바목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(촬영소 제외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•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•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•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이전 기관의 업무시설 •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업무시설 • 부속용도로서의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, 라목, 바목 내지 아목 • 부속용도로서의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, 라목, 바목, 아목,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(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		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• 「학교보건법」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
			• 공공업무시설
			• 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%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% 이하에 한한다.
		해당블록	• (기정) 업1~2, 업4-2, 업5, 업13, 업15-1~3 • (변경) 업1, 업2-1, 업4-2, 업5, 업13, 업15-1~3
		건폐율	• 70% 이하
		용적률	• 400% 이하
		높 이	• 최저층수 2층 이상, 최고층수 10층 이하 - (최고높이 : 45m 이하)

[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도]

기 정



변경


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6일

예 천 군



1. 개정이유

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, 안정된 지방세 감면 업무를 운영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 연장(안 제2조)

- 2025년 6월 30일 ⇨ 2028년 6월 30일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ycge0144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재무과

3) 팩스 : 054-650-6871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(전화 : 054-650-6871)에
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

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

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 2025년 6월 30일”을 “2028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2025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
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
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
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「지방세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(이하 “자동차세”라 한다)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[illegible]

2028년 6월 30일까지 -----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6일

예 천



1. 조례명 :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및 개선 지원을 통한 주택 화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 추가 신설 (안 제4조 제3항)

3. 전기,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
노후시설 자재 교체

나.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시설 추가 반영(안 별지 서식)

4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안전재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argon0623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안전재난과

3) 팩스 : 054-650-615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(전화 : 054-650-6555)에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
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
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2507호

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전기,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
노후시설 자재 교체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
지원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		세대원수	
	주소				전화번호(휴대폰)	
	대상자 구 분	☐ 수급자		☐ 한부모가족		담당공무원 확 인 란
		☐ 차상위계층		☐ 청소년 가장		
	☐ 장애인		☐ 65세 이상 단독세대			
	☐ 다문화가족		☐ 기타()			
지원시설	☐ 가스 ☐ 소방 ☐ 전기 ☐ 난방 ☐ 기타()					

「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예천군수 귀하

첨부서류	1.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 :장애인 복지카드,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)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신청인	
(서명 또는 인)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범위)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2.(생략) <신설>	제4조(지원범위) ----- -----. 1.~2.(현행과 같음) <u>3. 전기,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</u> <u>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</u> <u>노후시설 자재 교체</u>
3. (생략)	<u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u>

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6일

예 천 군



1. 개정이유

예천군 군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, 이의신청을 할 경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인 선정 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,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2024.12.31.) 사항을 반영하여 불복청구 대상 세액을 당초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「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 제41조제1항
 -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(1천만원→2천만원)

- 「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」 별지 제47호 서식(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)
 -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(1천만원→2천만원)
 - 선정대리인 신청 요건 확대 사항 추가
 - ① 개인 재산, 종합소득금액 확인 시 배우자 재산·소득 합산 제외
 - ② 종전까지는 개인만 가능했으나, 영세법인(매출액 3억원 이하, 자산가액 5억원 이하)에 대하여 선정대리인 신청 허용
 - 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 삭제
 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매출액이 확인 가능하므로 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를 징구하지 않음

3. 개정조례 및 규칙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기획예산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bbogury2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기획예산실

3) 팩스 : 054-650-605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(전화 : 054-650-6041)

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
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 및 규칙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1조제1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3조 (선정대리인 의무·우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선정대리인 의무·우대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기한의 연장신청) ① (생략)	제34조(기한의 연장신청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41조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‘청구 등’이라 한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<u>1천만원</u>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‘청구인 등’이라 한다.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(이하 ‘선정대리인’이라 한다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	제41조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천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선정대리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이 시행규칙에 따른다.

제4조 (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른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기재는 이 시행규칙에 따른다.

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 (청구인)	성 명 (법인명)	생 년 월 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(전화번호:)	
	휴대전화번호		

접수번호				
처분내용	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(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, 기분,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)			
	연도	기분	세목	부과액

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.

1. 청구·신청인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,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

2.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

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

4.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

5.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일 것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, 예천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법인의 매출액 확인을 위한 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’ 별첨(뒷면)

신청인(청구인)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예천군수 귀하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해당 여부 2. 개인의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, 법인의 매출액과 자산가액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예천군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(종합소득금액, 매출액 확인)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구분	행정정보명	비고
개인	소득금액증명	
법인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영리 법인
	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	비영리 법인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참고 1 관계법령

【지방세기본법】

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의신청인등”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 또는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 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9., 2021. 11. 23., 2024. 12. 31.>

1.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개인인 경우: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
나. 법인(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,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인 경우: 「법인세법」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
2. 삭제 <2024. 12. 31.>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
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

5.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,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

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,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[본조신설 2019. 12. 31.]

【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】

제62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의신청인등”이라 한다)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
2.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4. 12. 31.>

1. 종합소득금액의 경우: 5천만원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,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.

2.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: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. 다만,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가.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

나.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

다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

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,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. <신설 2024. 12. 31.>

1. 매출액의 경우: 3억원

2. 자산가액의 경우: 5억원

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체납자 등”이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. <개정 2024. 12. 31.>

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. <개정 2024. 12. 31.>

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,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31.>
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, 대리인의 임기·위촉,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·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2. 31.>

[본조신설 2019. 12. 31.]